

(주)폴무원전략위원회 운영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 37 조의 2 및 이사회규정 제 12 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내 위원회인 전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직무와 권한, 기능) ①위원회는 회사의 신사업 및 해외진출 등에 관한 주요 투자(제 9 조 제 1 항의 정의에 의하며, 이하 “주요투자”라 함) 및 중기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한다.

② 위원회는 회사의 주요투자 및 중기사업계획에 대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.

제 3 조 (구 성) ①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 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②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 인은 사내이사로 한다.

제 4 조 (위원장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.

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(종류) ①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
②정기위원회는 중기사업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매년 2 분기 중 개최한다.

③임시위원회는 주요 투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6 조 (소집권자)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 유고시에는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다만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집절차)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1 주간 전까지 각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 (결의방법)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 또는 결의할 수 있다.

④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⑤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부의사항)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요 투자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의견제공

(1) 연결자기자본의 (100 분의 5)이상의 출자(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함) 또는 출자지분 처분

(2) 연결자기자본의 (100 분의 10)이상의 신규시설 투자, 시설증설, 별도

공장의 신설

- (3) 연결자산총액 (100 분의 5)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
 - (4) 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이 연결자산총액 (100 분의 5) 이상인 영업양수 또는 양도
 - (5) 대상 영업부문의 매출이 연결매출총액 (100 분의 5) 이상인 영업양수 또는 양도
 - (6) 대상 영업부문의 부채가 연결부채총액 (100 분의 5) 이상인 영업양수 또는 양도
 - (7) 자산양수도 해당가액이 연결자산총액 (100 분의 5) 이상인 자산양수 또는 양도
2. 회사의 중기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의견제공

제 10 조 (관계인의 출석 등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이사회, 대표이사와의 관계) ①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요 투자 및 중기사업계획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회사의 주요 투자 및 중기사업계획에 관한 심의 결과 및/또는 의견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.

제 12 조 (의사록)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3 조 (간 사) ①위원회에 간사를 둔다

②간사는 M&A 및 전략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4 조 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칙(1)

이 규정은 201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)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